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4. 02.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291호로 2024년 2월 8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관련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최대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서울시 지명위원의 겸임 조항”을 삭제(현행 제2조제4항 삭제)

다.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5조)

마. 의회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삭제(현행 제9조의2 삭제)

바. 위원의 출석 수당을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사.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안 제1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3.11.7.)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추가하고,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구성)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의2<sup>1)</sup>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현행의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겸임 조항은 삭제함. 다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이 명백하게 명시되지 않은바, 지명위원회 회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세칙 마련 시 구체적인 자격 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임기)는 시행령 제87조<sup>2)</sup>의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안 제4조(해촉)는 시행령 제88조의<sup>2,3)</sup>에서 해촉 사유에 대한 위임을 바탕으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조항이 있음에도 본 조례에 해촉 사유를 추가한 것은 시행령에서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는 시행령 제89조<sup>4)</sup>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조례 제9조의<sup>2)</sup>(승인)를 삭제함. 해당 조항은 「영등포구

---

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 2)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제88조의<sup>2)</sup>(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 4)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건」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지명을 확정하기 위해” 상정된 바 있고, 제12회 임시회<sup>5)</sup>에서 의결된 바 있음. 다만, 이 조항의 근거는 상위법에서 찾을 수 없어 삭제하고, 관계법령에 근거한 심의 절차<sup>6)</sup>를 따르는 것이 법령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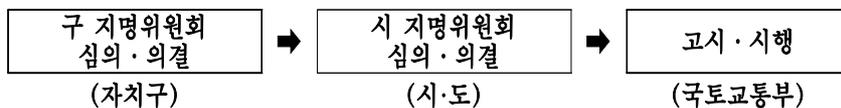
- 현행 조례 제10조(수당)를 삭제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4조<sup>7)</sup>와 중복되어 삭제함.
- 그 외로 조례 전문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고,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

5) 제12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중(1992.9.4.)

6) 지명의 결정 심의 절차



7) 제14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